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 7. 29.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상 탁 (인)

대개화협 규정2026-9

1. 규정명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전부개정

2. 개정목적 및 내용

- ○ 후보자의 선거인명부열람 및 확인 시한을 명시
- ○ 각 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
- ○ 입후보등록 신청서식을 별첨으로 규정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선거와 안건결정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협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월회비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미납금이 있는 회원은 선거인 자격이 없다.

제3조(선거구) 선거구는 대구광역시 일원을 1개 선거구로 한다. 다만, 투표소의 설치는 상황에 따라 2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선출방법)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무기명・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감사는 대의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는 대의원 중 이사회에서, 대의원 결원 시는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피선거권) 정관 제2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1. 협회의 회비 등을 선거공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미납한 경력(금액)이 있는 등 정관 제9조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회비 등 미납한 금액이 6개월분 회비 이하인 자가 후보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전액납부하고 회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
2. 본 규정 제 18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선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협회와 계약(약정, 협약, MOU 등의 서면약속)하여, 협회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사업을 한 자(실질적으로 종사한 자도 포함).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는 임원 및 대의원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협회의 전무로 한다.

⑤ 선거사무는 협회의 직원이 한다. 다만,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은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 임기 및 처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에 구성하고, 선거일 7일 후에 해체하며, 해체와 함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한 공고
2. 입후보자의 등록, 사퇴 수리
3. 후보자의 인적사항 공고
4. 입후보자의 등록순위 결정(기호결정)
5. 후보자 선거홍보물 등의 심의 및 배포 허가
6. 선거인 명부 작성
7.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운영 관리
8. 참관인 등록
9.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10. 투·개표 절차의 공고
11. 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문서의 서명 날인자가 된다.

제10조(선거일정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15일전에 투표일자,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의 정수 및 선거인명부

제11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2부 작성하여 비치한다. 다만, 이사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 교부신청[별지14]이 있는 때에는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 명부작성 이후 양도, 양수 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취득한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① 모든 회원은 선거전일 17:00까지 누락, 오기, 착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전일 18:00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날인을 해야 한다. 다만, 확인을 하지 않은 후보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제13조(입후보 등록)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0일 전까지 서면[별지1~별지8]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신청서 1부(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2. 이력서 1부
3. 규정 준수서약서 1부

② 구비서류 중 결격사유 조회는 협회에서 일괄 발급 신청하며, 신청구비서류는 선거공고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임원 입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선거는 1,000만원
2. 부이사장 선거는 300만원

제15조(입후보등록 서류 접수 및 등록증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시 다음의 제1호를 확인하여 접수증[별지9]을 교부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심사한 후 적법한 후보자에게 후보 등록증[별지10]을 교부한다.

1. 후보등록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정관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3. 출마자격 유무(제5조 : 피선거권)

제16조(후보자 사퇴) 등록한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선

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식[별지11]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제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음료수 등은 제공할 수 있다.
2. 허위의 사실로 타 후보자를 모함·비방·인신공격 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서면 또는 서신, 유인물, 광고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에 사용할 서면 또는 서신, 유인물, 광고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허가된 것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후보의 이익을 위해 선거업무에 활동하는 제3자가 행한 제1호 내지 제2호의 불법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선거 홍보물) 선거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격을 정하여 제작하고 각 후보자별로 배부한다.

1. 명함: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자별 각 1,000매,
   이사 및 대의원 각 후보자별 500매
2. 홍보물(이사장 후보): 원고를 심사한 후 A4용지 4면으로 4,000부 제작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19조(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고시 투표소의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 선거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0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선거관리위원, 투표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별지12] 양식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제21조(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참관인) ① 이사장·부이사장 후보자는 선거권자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2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별지13]으로 신고하여 투표와 개표상황을 참관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참관할 수 있다.

② 참관인에 대한 수당은 각 이사장후보가 지급한다.

제23조(투표용지 작성)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 기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정한다.

제24조(투표용지 교부)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5조(기표)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투표용지에 낙서 및 훼손된 것
5.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것

6.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제26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마감 후 투표소에서 한다.
② 투표함을 개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회원의 수, 투표자의 수, 기권자의 수, 투표용지 교부매수 및 잔여매수 등을 발표하고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봉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함하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록하고, 투표용지의 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④ 개표소에는 후보자,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선거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7조(투・개표소내외 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지시에 불응하는 때에는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이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참관인으로부터 투표 또는 개표에 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6장 당선인

제29조(당선인의 결정)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부이사장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출할 정수 이하일 때 이거나,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임원 및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에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당선인의 통지와 공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

이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 및 대의원 자격의 실효) ① 당선자 확정 후에도 임원 및 대의원의 출마자격 결격사유 및 선거운동 제한행위가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다음순위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하며.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선거전일까지 이의를 제기당한 당선자에 한한다.
② 제16조의 선거운동 제한행위에 관한 이의제기는 후보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이의제기에 관한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며, 이의제기의 소를 제기할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32조(투표용지의 보관)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후보자별로 묶어 후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밀봉하여 3개월 간 협회에 보관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예외 규정) ①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충당하며, 과부족액을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서식변경 절차) 별첨 서식의 경미한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변경한다.

제35조(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선거) 선거(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개표시스템(K-voting)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진 한국전자투표(Kevoting) 등(이하에서 “전자투표”라 함)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정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임·대의원 선출선거가 아닌 투표 등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0조(선거일정 공고), 제11조(선거인 명부), 제12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제13조(후보자 등록)에 규정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제19조(투표)의 투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표와 개표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방법 및 관리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후보자등록신청서(이사장・부이사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제13조 관련)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량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선거 (□이사장 □부이사장)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물 : 1. 이력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 3매 포함) 1부
2. 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
3. 회원 경력증명서 1부
4. 선거규정 등 준수확약서(붙임 유의사항) 1부
5. 기탁금 납부확인서 1부
6.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1부
7. 신용조회 확인서(은행발행) 1부
8. 홍보물(이사장후보에 한함) 원고 1부
9.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2] 후보자등록신청서<제13조 관련>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량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선거 (□이사 □대의원)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물 : 1. 이력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 3매 첨부) 1부
2. 회비등완납증명서 1부
3. 회원경력증명서 1부
4. 선거규정 등 준수확약서(붙임 유의사항) 1부
5. 기탁금 납부확인서 1부
6.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1부
7. 신용조회 확인서(은행발행) 1부
8.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3] 회비 등 완납증명 신청서<제13조 관련>

회비 등 완납증명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 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전화 :

상기 본인에게 부과된 협회 납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아래 부분은 협회에서 기재·확인하는 사항임

구분	가입회비	회 비	특부금	창부금	연기금	년 월 일 ~ 년 월 일 회비 미부과 기간 및 사유
납부 여부						

상기 신청인에게 부과된 협회 납부금 완납 여부는 위 기재와 같음.

년 월 일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별지4] 회원 경력증명 신청서<제13조 관련>

회원 경력증명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량번호		가입일자	

상기 본인에 대한 회원 경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아래 부분은 협회에서 기재·확인하는 사항임

○ **경력**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간(2000. 00. 00.~2000.00.00.)
회원의 자격정지(운송사업의 정지처분·휴업) 기간은 구분 작성, 비고란에 유형 기재

차량번호	부 터	까 지	비고

상기 신청인의 회원 경력은 위 기재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별지5] 선거규정 등 준수서약서<제13조 관련>

선거규정 등 준수서약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차 량 번 호 :

상기 본인은 금번 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00대 임원 및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협회의 정관과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선거공고” 기재 입후보자의 등록자격 및 선거운동 금지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등록 무효 또는 당선무효 처분을 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임대의원 선출선거 입후보자 유의사항 1부

2000. 00. 00.

위 확약인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6] 이력서<제13조 관련>

<table>
<tr><td rowspan="3">3㎝ x 4㎝
사진(붙임)</td><td colspan="4">이 력 서</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후보직</td><td colspan="3">□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휴대폰</td><td></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학력사항</td><td colspan="4"></td></tr>
<tr><td>협회직
경력사항</td><td colspan="4"></td></tr>
<tr><td>회원 재직중
수상내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00. 00. 00.
제출자 : ㊞</td></tr>
<tr><td colspan="5">(본란에 추가 제출 사진 2매를 붙이세요)</td></tr>
</table>

[별지7] 결격사유조회 동의서<제13조 관련>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1. 신청인

ㅇ 차 량 번 호 :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ㅇ 등록기준지(본적) :

상기 신청인은 협회 제00대 임·대의원선거 후보자인 바, 협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록기준지 기재 착오 등으로 결격사유 조회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동의자에게 귀속됩니다.

2000. 00. .

동의자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8] 기탁금납입증명서 <제13조, 제14조 관련>

기탁금납입증명서

기탁금액	금 월정(₩ 원)			
선 거 명	□이사장 □부이사장			
후 보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이사장 □부이사장) 후보등록 기탁금으로 납입하였음을 증명함

2000. 00. 00.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 (인)

[별지9] 후보등록 접수증<제15조 관련>

후보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

제○○대 임 . 대의원 후보등록 서류 접수증 교부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후 보 직	
	주 소		휴대전화	

신청인은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선거 후보로 등록하고 '임.대의원 선출선거 입후보자 유의사항'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후보등록 서류 접수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0. . .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절취선 : 선관위원장직인 간인----------

대구개별화물협회 제○○대 임 .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후 보 직	

상기인은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대 임•대의원 후보등록신청을 하였기에 접수증 및 붙임의 '임.대의원 선출선거 입후보자 유의사항'을 교부합니다. 후보자의 등록자격 유•무 심사 후 적법한 후보자에게 아래 일시•장소에서 후보등록증 및 명함 홍보물 등을 교부하오니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선거운동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선거 전일까지 가능).

붙임 : 임.대의원 선출선거 입후보자 유의사항 1부

- 일 시 : 2000. . .
- 장 소 : 협회

2000. . .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별지10] 후보등록증 <제15조 관련>

발행번호 : {{발행번호}} 호

후보등록증

○ 입후보 직명 : {{직위}}

○ 기 호 번 호 : {{기호}}

○ 성 명 : {{이름}}

○ 주 민 번 호 : {{생년월일}}

위 사람은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제○○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직위}}후보로 등록되었기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00. 00. 00.

대구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별지11] 후보자 사퇴 신청서<제16조 관련) >

후보자 사퇴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량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선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 후보자 000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12] 투・개표소 출입자의 표시<제20조 관련>

투·개표소 출입자의 표시

(선거관리위원용)

위 원
(위원장)

○ ○ ○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9cm

12cm

(선거종사원용)

제 호

투·개표사무원

○ ○ ○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9cm

12cm

제 호

투·개표참관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주의사항》
이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습니다.

12cm

9cm

[별지13] 참관인 등록 신청서<제22조 관련>

참관인등록신청서

□ 차 량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본인은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상기 선거권자를 투표 및 개표 참관인으로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참관인 : (인)

(□이사장 □부이사장)입후보자 : (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00대 임·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14] 선거인명부 교부 신청서<제11조 관련>

선거인명부 교부신청서

신청인	성 명		차량번호	
	후보자직	이사장후보	연 락 처	
	주 소			
서 류 명		제○○대 임·대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용 도		제○○대 임·대의원선거의 선거인 확인		

신청인은 제○○대 임·대의원선거 이사장후보자로서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용도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하겠음을 약속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열람하게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월 일

신청인 이사장후보자 : (날인)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위 신청서를 신청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접수)자 : ㊞